

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(제2조제1호가목 관련)

1. 일반기준

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가. 가중사유

- 1)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
- 2)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
- 3)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
- 4)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
- 5)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
- 6)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나. 감경사유

- 1) 미수에 그친 경우
- 2)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
- 3)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징계사유		징계기준		
		가 중	기 본	감 경
성폭력	강간	파면	해임	강등-정직
	강제추행	파면-해임	강등	정직-감봉
	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
성희롱		파면-강등	정직	감봉
성매매		파면-강등	정직	감봉
성폭력 목 인·방조행위	지휘관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
	그 밖의 사람	해임-강등	정직	감봉-근신

※비고

1. 강간,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2. "카메라등이용촬영"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(미수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"지휘관"이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.